

의안번호	2204350
의 퇴 인	한정애 의원
회 답 일	2025. 1. 14.
추계번호	24A41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 ¹⁾ 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전기차 주차 중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진압을 위하여 ①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②지하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²⁾
- 개정안에 따라 지상에 신규 또는 이전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에 대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 현재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과 관련된 국가³⁾의 재정사업으로는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화재 예방(스마트제어) 기능을 갖춘 완속충전기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사업⁴⁾”이 있음
 - 이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위치(지상·지하)와 관계 없이 지원되는 재정사업으로, 만약 개정안을 근거로 지상에 신규 또는 이전 설치되는 충전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지상에 신규 또는 이전 설치될 충전 시설의 수에 지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재정지출 증가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려는 충전시설의 수를 가정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과

2) 안 제11조의2제13항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므로 전기차 외에도 수소차 등 다른 차량 또한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전기차를 중심으로 검토함

3) 국가 외에도 지방비를 재원으로 충전시설 설치 비용 등을 자체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나, 현재 지방비 지원 현황을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함

4)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1633-31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내역사업

* 환경부 소관이며, 해당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는 재정사업은 별도로 없음

추계기간 동안 지하에 신규로 설치될 충전시설 중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수요는 해당 주차장이 보유한 부지의 노면 등 설치구역의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지하 충전시설이 소재한 주차장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움

○ 또한, 재정지출 증가액의 산출을 위해서는 지상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단가를 설정하여야 하나, 기존에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설치 보조금을 이미 지원 중인 상황에서 지상에 설치되는 충전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을 가산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 가산 지급의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현황과 현행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음

－ **(전용주차구역)**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총 1만 5,880면 중 지상에 설치된 주차 면수는 1만 2,765면, 지하에 설치된 주차 면수는 2,115면,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주차 면수는 964면

* [참고자료 1]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 **(충전시설)** 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기차 충전시설 총 41만 4,686기 중 지상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17만 1,139기,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21만 1,312기이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확인 중)인 충전시설은 3만 2,235기

* [참고자료 2]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 **(충전기 설치단가)** 환경부의 2025년 예산상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단가는 급속충전기(350kW) 7,500만원(=150백만원 × 보조율 50%), 화재예방(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300만원, 화재예방 완속충전기 교체 150만원,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1,000만원(=20백만원 × 보조율 50%)

* [참고자료 3] 2025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예산상 보조금 지원 단가

□ 이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대한 지상 신규·이전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단위: 면)

구분	지상	지하	미확인	합계
공영	8,570	1,136	739	10,445
민영	4,195	1,015	225	5,435
합계	12,765	2,151	964	15,880 ¹⁾

주: 1) 전기차 충전기 전체 41만 4,686기 중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충전기 1만 5,880기

1.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시스템 등록(2024.12.31.) 기준

자료: 한국환경공단

[참고자료 2]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단위: 기)

구분	지상	지하	확인중	합계
국가(환경부)	8,072	281	—	8,353
지방자치단체	358	86	634	1,078
민간 등 기타	162,709	210,945	31,601	405,255
합계	171,139	211,312	32,235	414,686

주: 2024.12.31. 기준
자료: 환경부

[참고자료 3] 2025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예산 현황

구분	내용
사업명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33-312)의 내역사업
사업내용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용 충전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거나, 구축 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보조(민간 및 지자체)
지원 단가 및 비율	■ 급속(350kW): 150백만원(보조율 50%) ■ 화재예방 완속: 3백만원 이내(정액보조) ■ 화재예방 완속 교체: 1.5백만원 이내(정액보조) ■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20백만원(보조율 50%)
2025년 예산안 산출 근거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623,750백만원 1. 직접설치(환경부 소유·운영): 91,500백만원 - (급속 350kW) 610기 × 150백만원 = 91,500백만원 2. 민간자본보조(민간사업자 운영): 532,250백만원 - (급속 350kW) 3,790기 × 150백만원 × 50% = 284,250백만원 - (스마트 제어: 화재예방 완속) 71,000기 × 3백만원(정액) = 213,000백만원 - (스마트 제어 교체: 화재예방 완속 교체) 20,000기 × 1.5백만원(정액) = 30,000백만원 - (이륜차 배터리교환형) 500기 × 20백만원 × 50% = 5,000백만원

자료: 환경부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